

대전지방법원 2020. 7. 15 선고 2019가단2207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 단체

피 고 B(개명 전 성명 C)

변론 종결 2020. 6. 24

판결 선고 2020. 7. 15

주 문

1. 피고는 D(E생)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1997. 10. 14. 접수 제518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7. 10. 14.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3년경 D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차전10868호로 원고에게 33,045,766원과 그중 12,777,669원에 대하여 2013. 6. 24.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3. 6. 26. D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고 한다)을 발령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13. 7. 18. 확정되었다.

나. 한편, 피고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 다)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7. 10. 14. 접수 제51858호로 근저당권설 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를 경료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 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,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(민법 제166조 제1항),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,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 시로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.

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1997. 10. 13.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D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2,6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나아가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관하여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담보채무는 그 성립 시로 봄이 상당한 위 설정계약 체결일인 1997. 10. 13.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2007. 10. 14.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나. 그러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7. 10. 14. 접수 제518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7. 10. 14.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막강균

별지